



정책자료 2023-0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 저출산

변수정
한선희



BIG
DATA



■ 연구진

연구책임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한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책자료 2023-0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 저출산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61-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f.2023.02>

발|간|사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5년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이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설정하여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인구변화 및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자주 논의되는 것은 한국 가족의 모습이다. 전형적인 모습의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결혼, 출산 등 가족 형성·구성 및 확장에서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족의 변화 현상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가 향후 한국의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추진과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가족 다양성 정책의 변화 및 모니터링 영역과 방법	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변화	9
제2절 모니터링 영역	16
제3절 모니터링 방법	20
제3장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관련 법 영역 모니터링	27
제1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29
제2절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47
제3절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53
제4장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서비스 체계 영역 모니터링	65
제1절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67
제2절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75
제3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95
제5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영역 모니터링	113
제1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115
제2절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26

제6장 결론	137
--------------	-----

참고문헌	145
------------	-----

부 록	147
-----------	-----

[부록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법 관련 정책)	147
--	-----

[부록 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한부모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53
---	-----

[부록 3]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다문화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60
---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과제 리스트: 2022년 시행계획	15
〈표 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 용’ 분야 세부 사업	17
〈표 2-3〉 모니터링 기준	23
〈표 2-4〉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과제 전문 영역 구분	25
〈표 2-5〉 전문가 조사 참여자	26
〈표 3-1〉 민법 제781조와 제844조	54
〈표 4-1〉 가족상담 운영	68
〈표 4-2〉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다재다능) 프로그램	102
〈표 5-1〉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기관(총 17개소) 리스트	126
〈표 6-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정책 모니터링 결과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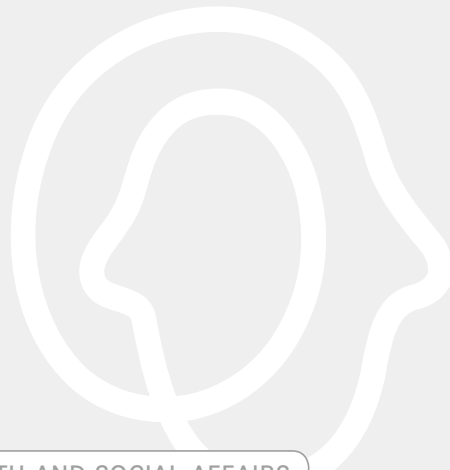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10
[그림 4-1] 가족상담전화 조직체계	68
[그림 4-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급여 지원체계	89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의 가족 유형이나 형태가 다양해졌다는 사실은 이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혼인한 부부와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이행의 변화, 가족 개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 등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과 행동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가족으로 분화했다. 이에 따라 핵가족 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구성된 가족정책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점점 증가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그 배경에 결혼과 출산의 가치관 및 이행의 변화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그 안에서 더 다양한 가족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의 결과가 정책에 나타난 것은 2016년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가 추진과제에 포함되었는데, 그 안에 한부모 및 비혼·동거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으로 보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내용이 다량 포함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여러 기본계획에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 법제도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어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이라는 영역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이라는 추진계획을 다룬다. 먼저,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추진계획 안에서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을 다룬다.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추진계획에서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추진계획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세부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 발전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4인 핵가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온 정책에서 나아가 전통적인 모습과 다른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적 내용으로 잘 추진되는 과제도 있고,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책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획과 현실의 차이를 파악하거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의 다양한 가족 분야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매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시

행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영역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이 영역의 세부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 시행계획 중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의 세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에서의 가족 다양성 정책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다를 모니터링 영역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가족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이 언제부터 등장했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기본계획 중 이 연구에서 다루는 모니터링 영역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3장은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관련 법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이다.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의 보호 법제로 개선’에 속한 세부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다룬다.

제4장은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서비스 체계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이다. 이 영역에서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에 속한 세부 정책의 모니터링 결과를 다룬다.

제5장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영역의 모니터링 내용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포함된 세부 정책과제를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제6장은 모니터링 결과 요약 및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전문가 조사이다. 이는 2022년에 진행된 다른 분야 모니터링 연구(이소영 외, 2022, 조성호 외, 2022)에서 활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이전 연구의 전문가 조사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자세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는 제2장의 모니터링 방법에서 설명한다.



제2장

가족 다양성 정책의 변화 및 모니터링 영역과 방법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변화

제2절 모니터링 영역

제3절 모니터링 방법

제 2 장

가족 다양성 정책의 변화 및 모니터링 영역과 방법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변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도에 시작된 제3차 기본계획부터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분야에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 강화’, ‘비혼·동거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포용적 가족관 형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이라는 영역에서 가족 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이 영역은 3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추진계획을 통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 금지 법제화’,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추진계획 안에서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의 내용으로 세부 과제를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추진계획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담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1).

[그림 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4-1-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혼인·혈연·입양 중심의 가족 정의를 가족의 다양성·유연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건강가정'이란 용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 ●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민법 상 혼인·혈연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 개정 필요성 검토 - 가족 관련 개별법에 각 제도 취지에 맞는 가족의 범위 규정 마련 ● 다양한 가족의 삶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예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가칭」 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 등을 명문화 ● 가족 형태 및 상황(형성과정 포함)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낙인효과 및 차별 방지 ※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공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출요청 시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법제화 ■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방식·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칭생활·돌봄 공동체법」 제정 추진 - 다양한 가족의 삶이 사회적으로 실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법적 현황 진단 및 정책수요 파악 ■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 민법 상 자녀 성(姓) 결정 시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부모협의로 전환(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 결정권자 지정 등) - 현행 제도는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비혼·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야기 ※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합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 찬성(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여가부, '20)

● 아동권익 우선 관점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차별적인 구분 개선을 위한 친자 관계 법령 정비

- 현행 민법 상 친생추정 기준*인 '포태시주의'를 자녀 출생 시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부로 추정하는 '출생시주의'로 개선 논의

* (현행)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포태시주의) →
(개선) 모가 자녀를 출산한 당시의 배우자를 아버지로 추정 (출생시주의)

● 인지·파양 시 기존의 '부모 협의 조건' 등을 삭제하고, 종전 성(姓)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립

- 현행 제도는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 협의불가 시, 부(父)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녀의 생활안정 저해

● 신속한 미혼부 출생신고를 통한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상 신고에 필요한 가정법원 확인요건을 명확히 규정

- 모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도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정법원 확인요건 (현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선안)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검토

※ 현행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

• 미혼부가 모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을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특정불가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재량범위가 넓어 법원 판단*이 상이하므로 현장 혼란, 출생신고 누락 등 발생

* (사례) 동일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는 모의 인적 사항을 아는 경우로, 2심에서는 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 등

4-1-2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 통합 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 가족형태별(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확대 등 서비스 기반 강화

※ 가족형태별-생애주기별 가족센터 서비스 (예시)

- (가족형태별) 한부모(자녀양육 및 자립), 다문화(인권보호 및 자녀지원, 1인가구(사회관계망), 맞벌이(돌봄, 육아), 이혼위기(가족상담·아동지원)
- (생애주기별) 영유아-초등생(돌봄, 놀이), 청소년(사회성 증진, 사춘기 상담), 부모(남성육아프로그램, 부모-부부 교육), 노인(재무관리, 교류·소통지원)

- 돌봄, 상담, 교육 등 가족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체계* 내실화

* 통합신청(온라인·모바일), 실적관리, 만족도조사, 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체계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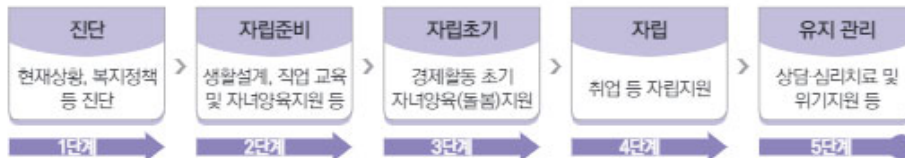
-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가족상담 전담 인력 확대, 가족전용 상담전화 기능 강화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 한부모 가족 양육비 및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 (양육비 지급 확대)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병급,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 24세 이하 →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 (양육비 확보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주기적인 면접교섭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육비의 실효적인 확보방안 마련
 - *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명단공개, 형사처벌 도입 등 검토
 - (주거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 소득기준 완화(중위 소득 60% 이하 → 10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대상 생계·주거·의료·양육·학습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 및 양육 부담 경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예시) >

• 상황 진단·직업 교육·양육 지원·취업 지원·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중 장기 지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자립지원패키지* 확대('20년 196개소), 다문화 부모학교 신설**, 실용적 한국어 교육 강화로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
 - * 결혼이민자의 주도적인 정착과정 설계, 관련서비스 탐색, 실행계획 수립 등 지원
 - ** '21년 신규, 검정고시 지원 등
-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 진로 설계, 한국어 교육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사회통합 및 역량개발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다재다능) 확대를 통해 자녀의 정체성, 사회성-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 지원('20년 196개소)
 - 이주민 밀집지역(안산·화성)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20~'21) 추진, 종합지원모델* 개발 및 점진적 확산 검토
 - *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로교육·취업 등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1-③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대중매체 모니터링, 법제도에 대한 차별평가 등을 통해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차별을 효율적으로 시정
 - 가족다양성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의 실질적 반영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법적 근거 마련 등
 - 법령, 계획, 정부사업 등에 대해 가족유형에 따른 고정관념 및 특성을 지표*로 하여 차별 평가 및 시정
 - * 지표기준(예시) : 부모의 혼인 여부(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에 따른 아동 차별, 부모의 국적, 부모와의 친생관계에 따른 아동 차별 등
- 다문화가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전* 및 우수작 활용 영상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 * 공익광고, 단편 영화시나리오 등 국민 참여 인식개선 공모전 실시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교사 연수과정에 가족다양성 교육 반영, 건강가정기본법에 교육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및 홍보
 - 다양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 내 비대칭적 호칭개선 및 평등한 돌봄가사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 지역 성 주류화, 양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양성평등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 * 지역양성평등센터 : 특화형 센터 시범운영('21년 1개소) → 추가 확대 검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p. 159-163.

1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제4차 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에서는 총 17개 세부 과제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2년 시행계획의 세부 과제와 추진 부서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정책 분야 과제 리스트: 2022년 시행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주무부서
1-1-가	1-1-가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1-가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가칭)평등법 논의)	법무부 인권정책과
	1-1-가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행정안전부 주민과
1-1-나	1-1-나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1-다	1-1-다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의 보호 법제로 개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1-다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의 보호 법제로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2-가	1-2-가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2-나	1-2-나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주거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2-나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2-나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청소년한부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2-다	1-2-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2-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다문화가족 자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2-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 참여 확대(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학교배정청소년지원과
1-3-가	1-3-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3-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3-나	1-3-나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3-나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제2절 모니터링 영역

이 연구에서 다루는 모니터링 영역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중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022년도 시행계획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부분은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 중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과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는 세부 사업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영역 자체가 사업이다.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은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그 특성이나 욕구가 다른 것에 대비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영역에서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와 ‘(가칭)평등법 논의’,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의 세부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영역은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부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에서는 ‘주거지원 강화’,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청소년한부모’ 관련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영역에서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이

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영역은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사업과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다루고 있고,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영역은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세부 사업으로 구성해 놓았다.

이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부분에 담긴 17개의 세부 사업을 모니터링 범위로 하며, 각 세부 사업과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세부 사업

과제명	기본계획 과제
<div data-bbox="294 1373 432 1559" data-kind="parent" data-rs="3">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div> <div data-bbox="463 1151 748 1245">①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div>	건강가정기본법상의 혼인·혈연·입양 중심의 가족의 정의를 개정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제 마련 국회 논의 지원
<div data-bbox="294 1373 432 1559" data-kind="ghost"></div> <div data-bbox="463 1400 686 1431">② (가칭)평등법 논의</div>	- 다양한 가족의 삶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예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가칭)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 등을 명문화
<div data-bbox="294 1373 432 1559" data-kind="ghost"></div> <div data-bbox="463 1671 726 1702">③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div>	- 가족 형태 및 상황(형성 과정 포함)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공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출 요청 시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법제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추진

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과제명	기본계획 과제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 자녀의 성분에 관한 「민법」 제781조 개정 필요성 검토 - 아동권익 우선 관점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차별적인 구분 개선 등을 위한 친자관계 법령 정비
	• 자녀 성(姓) 결정 시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차별적 구분 개선을 위한 친자관계 법령 정비 및 인지 파양 시 종전 성(姓) 계속 사용 원칙 확립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 가족 형태별(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확대 등 서비스 기반 강화 - 가족센터 건립 확대, 온라인서비스 내실화, 가족상담 기능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① 주거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21년 222호 → '22년 245호(증 23호))
	②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 (양육비 지급 확대)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병급,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24세 이하 →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 (양육비 확보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주기적인 면접교섭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육비의 실효적인 확보방안 마련 *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명단 공개, 형사처벌 도입 등 검토
	③ 청소년한부모 • 청소년한부모 대상 생계·주거·의료·양육·학습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과제명	기본계획 과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 자립지원패키지 확대('21년 203개소) • 다문화부모학교 프로그램 확대 •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로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 진로 설계, 한국어 교육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사회통합 및 역량 개발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다재다능) 확대를 통해 자녀의 정체성·사회성 등 개발 프로그램 지원('22년 204개소)
	• 이주민 밀집 지역(안산·화성)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20~'21년) 추진, • 종합지원모델* 개발 및 점진적 확산 검토 *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로교육·취업 등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가족 편견요인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 • 가족 유형에 따른 고정관념 등 차별 평가 및 시정
	• 전 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및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전개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가족 다양성 교육 실시 • 가족 다양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 양성평등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 지역양성평등센터 전국 확대

자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세부 사업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절 모니터링 방법¹⁾

모니터링의 방법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이소영 외, 2022; 조성호 외, 2022)에서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 중 전문가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조사는 세부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과정, 사업 관리 및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 0~10점까지 평가하도록 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 연구는 이전 모니터링 연구(조성호 외, 2022)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을 적용하였는데, 모니터링 각 항목의 모니터링 내용을 질문 형식(〈표 2-7〉 참조)으로 전문가에게 제공하였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을 모니터링한다. 이 모니터링 항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적, 세부 정책 영역의 내용과 2022년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전문가에게 ‘세부 사업 목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와 ‘세부 사업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제공하였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은 사업 추진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 목적 달성과 내용 실현에 적합한 추진 주체 및 추진 방법, 추진 절차 등을 설

1) 이 연구의 모니터링 방식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기존 모니터링 연구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소영 외. (2022).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p.56, 조성호 외. (202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p.116, pp. 376-37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다. 이를 위해 추진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 추진에 적합한 추진 체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체계가 사업 목표와 내용 실현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제공해 시행계획에 제시된 사업 대상, 사업 시행 주체,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업 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모니터링은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인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되어 수립되었는가?’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이 구체적인가?’라는 질문을 전문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음 모니터링 항목은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이다. 이는 사업 추진 일정이 사업 추진 체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사업 특성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관련 사항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질문은 ‘사업 추진 일정이 사업의 특성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인가?’, ‘사업 추진 일정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다.

사업 관리와 성과 측정에 관한 모니터링은 ‘사업 관리의 적정성’과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이다. 먼저, ‘사업 관리의 적정성’은 사업 추진 상

황의 정기적(상시적, 수시적) 모니터링 여부, 즉 사업 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체크리스트, 매뉴얼, 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활용하도록 전문가 조사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월별/분기별/반기별 점검회의 여부 등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과관리는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은 과제에서 설정된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지 여부, 성과지표가 구체적인지 여부 등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항목이다. 여기에서는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핵심 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 여부나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추진 방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가?’라는 질문을 제공하였고,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적극적인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표 2-7〉 모니터링 기준

모니터링 부문	모니터링 항목 및 내용
사업 개요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적, 세부 정책 영역의 내용과 모니터링 대상 개별 사업의 목적·내용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① 세부 사업 목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② 세부 사업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 목적 달성과 내용 실현에 적합한 추진 주체 및 추진 방법, 추진 절차 등을 설정했는지 여부
	① 사업 추진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추진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사업 추진에 적합한 추진 체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사업 추진 체계가 사업 목표와 내용 실현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었는가? - 제시된 내용(사업 대상, 사업 시행 주체,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인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인지 여부
	①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되어 수립되었는가? ②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이 구체적인가?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일정이 사업 추진 체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사업 특성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
	① 사업 추진 일정이 사업의 특성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②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인가? ③ 사업 추진 일정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가?

모니터링 부문	모니터링 항목 및 내용
사업 관리 및 성과 측정	사업 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 상황의 정기적(상시적, 수시적) 모니터링 여부: 사업 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①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가? - 체크리스트, 매뉴얼, 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과관리는 적절한가?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월별/분기별/반기별 점검회의 여부 등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 과제에서 설정된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지 여부, 성과지표가 구체적인지 여부 등 성과지표의 적절성 ①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가? -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핵심 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 여부 -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추진 방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②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가?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이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적절한가?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적극적인지 여부

자료: 이소영 외. (2022).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p.56; 조성호 외. (202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p.116, pp. 376-37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의 세부 정책은 법 관련 정책,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가족 관련 인식 및 문화 관련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법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와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법률혼·부계 중

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였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과제는 한부모가족 전문가 집단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과제는 다문화가족 전문가 집단에 모니터링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과제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전문가 집단에 동시에 모니터링을 요청하였다.

〈표 2-4〉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과제 전문 영역 구분

전문 영역	과제명
법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가칭)평등법 논의)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성가족부)
한부모/ 다문화 가족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주거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청소년한부모)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 참여 확대(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한부모/ 다문화 가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공공서비스 모니터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자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세부 정책과제를 전문 영역으로 구분해 작성.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과제 모니터링에는 법 관련 전문가 7명,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가 7명,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이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22명이다. 전문가 집단은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표 2-5〉 전문가 조사 참여자

성명	소속	전공
000	국책연구기관	여성학
000	국책연구기관	가족사회학
000	지자체 출연연구원	사회학
000	대학	가족법학
000	민간 연구소	여성학
000	프리랜서	정치학
000	비영리단체	현장
000	대학	상담심리학
000	지자체 출연연구원	여성학
000	대학	사회복지학
000	대학	사회복지학
000	대학	가족학
000	국책연구기관	사회복지학
000	국책연구기관	심리학
000	지자체 출연기관	현장
000	대학	교육학
000	지자체 출연기관	현장
000	대학	사회학
000	대학	문화인류학
000	지자체 출연연구원	사회학
000	지자체 출연기관	현장
000	국책연구기관	법학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관련 법 영역 모니터링

제1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
별금지 법제화

제2절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제3절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제 3 장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관련 법 영역 모니터링

제1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1.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가. 사업 소개¹⁾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이라는 명칭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떠올리게 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법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남인순 의원(2020.9.1.)과 정춘숙 의원(2020.11.2.)이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건강가정’ 용어 변경, ‘가족’의 정의 확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방지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1)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47-1148 참고하여 작성.

2021년에는 해당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및 심사되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 간에 이견이 계속되어 계속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 금지 법제화’ 사업의 목적은 가족 유형에 따라 정책적 차별과 편견이 생기는 법령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것이고, 사업의 내용은 ‘건강가정’ 용어 삭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령 변경 등이다(대한민국정부, 2022).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9.7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최저점은 9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55점보다 2.16점 높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8.77점보다 0.9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가족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관련이 깊고,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과제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

개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의 추진 체계는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를 실시하여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22).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까지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 평가 점수는 평균 7.14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55점보다 0.41점 낮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8.03점보다 0.89점 낮았다.

사업의 추진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관련 단체 간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는 만큼 의견 수렴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2022년 사업의 추진 내용은 ‘가족 정의’와 ‘건강가정’ 용어에 대한 삭제 및 변경을 골자로 한다(대한민국정부, 2022). ‘건강가정’ 용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이미지가 도출될 가능성을 두고 중립적인 용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10.27.).²⁾ 이에 대해

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2005.10.27.).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야” 보도자료.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 수정 및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남인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였다.³⁾ 이에 정부도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에도 동의하였다.⁴⁾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기존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여⁵⁾ 법안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7.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55점보다 0.12점 낮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7.73점보다 0.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법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가족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견이 대립되는 만큼 반대 의견에 대한 적극적 반박 논리 구성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315&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554996>

3)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n.d.).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숙 의원 등 16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P0G0K9Q0D1N1N1E2I7V2C8J3X1X1

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1. 4. 13.). 가족 변화에 맞추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 정책뉴스.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231

5) 계승현. (2022.9.24.). 여가부, 법적가족에 사실혼·동거 배제...기존 입장 뒤집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4023551530>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2022년 한 해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까지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평가 점수는 6.2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55점보다 1.26점 낮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평가 평균인 7.67점보다 1.38점 낮았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법 개정 일정이 연중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기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6.5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55점보다 0.98점 낮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7.43점보다 0.86점 낮았다.

여성가족부의 담당부서가 사업수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될 경우 대응 방법이 미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이고, 측정 방식은 가족 정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 법률안 개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까지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한 결과 8.14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이 사업 목표라는 점에서 성과 지표는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입법 여부뿐 아니라 관련 여론 조성, 대(對) 국회 설명 등으로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추진에서 근간이 되는 핵심 법안이었지만 반대 의견과 협의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회 계류 후 폐기되어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주무 부처가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추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추진 체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등 사업 관리가 미흡하며, 성과 측정 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여부 확인과 더불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가칭)평등법 논의

가. 사업 소개⁶⁾

2020년부터 추진된 ‘(가칭)평등법 논의’는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의한 후,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에는 국회의원 발의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총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1년 추진 실적으로는 6월부터 12월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총 3개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있다.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차별금지 사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안심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2022년에는 해당 법률 제·개정 지원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

6)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50-1151 참고하여 작성.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의 목적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22).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과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악의적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다양한 가족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혼인 여부, 임신·출산 등 가족의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⁷⁾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수행한 결과, 평가점수는 평균 9.7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최저점 9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평등법 논의’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90점보다 1.81점 높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8.77점보다 0.9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본 사업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한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 등을 법제화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제도의 제도화라는 사업의 목

7)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n.d.).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적과 일치한다고 평가하였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법무부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8.14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평등법 논의’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90점보다 0.24점 높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8.03점보다 0.11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나 입법 지원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법률안 제·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적극적인 방안도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법무부 내에서 인권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시행 주체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은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차별을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제·개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 등에서 관련 법 심의 시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가칭)평등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2006년 이래 지난 19대 국회까지 총 6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되었

다(김남규, 2021.8.31.).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21년 6월과 8월에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8월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현재 4건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수행한 결과 평균점수는 8.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자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연계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대 입장이 명확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반박 논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가칭)평등법 제·개정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심의 시 적극 협조함으로써 연중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29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평등법 논의’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90점보다 0.61점 낮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평가 평균인 7.67점보다 0.38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안 심의가 국회 일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구체적인 일정

이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기간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평등법 논의’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90점보다 0.47점 낮았고, 전체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7.43점과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특성상 성과를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의 주무 부서에서 사업수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회의 논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성과 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6.8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3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평등법 논의’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7.90점보다 1.10점 낮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7.34점보다 0.54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가칭)평등법 논의 사업’은 입법 여부뿐 아니라 관련 여론 조성, 국회를 상대로 한 설명 등으로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법률안 제·개정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 개선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사업의 추진 내용과 방식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회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칭)평등법이 계류 중인 이유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지 않아 발의 이후 사업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모니터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3.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가. 사업 소개⁸⁾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는 가족 형태 및 형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상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8)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52-1154 참고하여 작성.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의 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및 [별표 제7호서식(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을 법적 근거로 한다.

2021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에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에서 ‘부’·‘모’·‘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원칙적으로 재혼가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원들을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여야 했으나, 당사자들이 쌍방동의하는 경우 ‘부’·‘모’·‘자녀’로 표기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협의 중에 그쳤다. 또한, 2021년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경찰청과 국가보훈처 등 총 25개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2년 추진계획에는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에 민법상 가족 외의 자들을 전부 동거인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혼한 배우자의 손(자녀)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기재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명시하였다. 재혼한 배우자 손자녀가 계부가 세대주로 있는 곳의 세대원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손(자녀)’으로 표기하되, 당사자들 간의 동의하에 ‘손(자녀)’로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논의된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개정안을 공포하는 계획을 명시하였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의 목적은 재혼·입양 등 가족 형성 과정에 관한 사생활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증명서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2020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등·초본 발급 시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표시 내용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9.0점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은 8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8.55점보다 0.45점 높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8.77점보다 0.23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가족 개념의 확산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법제화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내용을 공유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공적증명서를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습관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

과는 평균 8.5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8.55점보다 0.02점 높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8.03점보다 0.5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추진 체계로 판단하였으나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및 검토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하여 공적증명서 접수, 활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평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은, 재혼가정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에 재혼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55점에 비해 0.12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7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가족 형태 및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업 목표와 일치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세대주와의 관계’ 개선 방안 중 당사자 쌍방이 원하는 경우 ‘부’·‘모’·‘자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인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769조에서 계친자관계는 법정친

자관계가 아니라 인척에 해당한다. 기존 「민법」 제 773조에서 계모자 관계는 법정친자관계로 상속, 부양 등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1990년 삭제되었다. 당사자가 입양을 선택함으로써 법정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이었다. 따라서 법체계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은 2022년 5월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같은 해 9월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29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55점에 비해 0.26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62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기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단기 추진 일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진 일정의 구체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예정되어 있던 정부 교체 일정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은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성과지표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5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55점보다 0.02점 높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7.43점보다 1.1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담당부처에서 사업수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제도 개선사항 홍보의 측정 방법은 홍보물·교육자료 제작, 제도 개선 공문, 보도자료 배포 실적 등을 합산하는 것이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성과지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 의견 조희 등을 실적으로 측정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사업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항목의 평가 평균인 8.55점보다 0.12점 낮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정성 항목의 평가 평균인 7.34점보다 1.09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관련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여 성과 목표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추가 의견으로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실제 사용자 평가를 시도하여 정책 효과를 측정한다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일반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가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공적 영역에서는 일반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모’·‘자녀’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 조항과 관련하여 ‘선택권의 확대’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지 정책적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법적 가족 외에 전부 동거인이나 동거 가족으로 바꾸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2절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1.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가. 사업 소개⁹⁾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은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 내용·방식·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제정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본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여,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실시한 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1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9월에 비혼동거 실태조사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동거 경험 이 있거나 현재 동거하고 있는 만 19~69세 일반 국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비혼동거 생활 경험, 배우자와 관계, 경제생활, 가족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법적으로 혼인·혈인 관계 여야만 가족이라는 응답이 2019년에 비해 약 3%p 감소하여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생활공동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제를 포함하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9)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56-1158 참고하여 작성.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의 목적은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을 제정하여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 내용·방식·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처음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발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박채영, 2021.12.14.).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9.5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8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69점에 비해 1.88점 높게 나타났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에 비해 0.80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생활·돌봄공동체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업 목표와 정합성을 이루는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가족 변화와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의 시행 계획에서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과 관련하여 2014년 관련 법 발의가 무산되었다는 내용에 더해 2023년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최초 발의한 것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의 추진 체계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법률안의 토대를 만들어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5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69점보다 0.12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46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법률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서 체계적인 목표 설정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를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14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4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69점보다 0.55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59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생활공동체의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법무부 인구정책 TF 발표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중장기 검토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진계획이 가족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법 제정 추진에 관한 노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추가로, 추진 주체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이 포

함되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2022년 상반기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69점보다 0.26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24점 낮았다.

전문가 의견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을 위한 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은 가족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를 성과지표로 두고 관리한다.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생활·돌봄공

동체법 제정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69점보다 0.26점 낮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관리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과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가 사업수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이 없어 사업 관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성과지표인 가족실태조사를 공표하여 비혼·동거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하는 것이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4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69점보다 0.69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보다 0.34점 낮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은 적절한 성과 측정 방식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주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가족 실태 조사 발표 외에 법률안 마련과 관련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1년에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2022년에는 신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도 사업 내용에 관련 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로 제시한 비혼동거 실태조사 포럼 개최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은 법 제정을 위한 환경 조성의 역할을 할 뿐 구체적 법률안 마련을 위한 사업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의 한계를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제시한 것은 모순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대상과 방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제3절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1.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가. 사업 소개¹⁰⁾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은 가족 제도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시행계획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민법」 제781조와 제844조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본 결정 시 부성(父性) 우선주의를 따르고,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녀 성을 부모 협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844조는 친생자 추정 기준을 ‘포태시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익 우선 관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간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자녀 출생 시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부로 추정하는 ‘출생시주의’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이뤄질 계획임을 명시하였다.

10)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59-1160 참고하여 작성.

〈표 3-1〉 민법 제781조와 제844조

민법	내용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1159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9.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8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33점보다 2.1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보다 0.66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성 결정 시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친생 추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고, 아동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의 추진 체계는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민법」 제781조 및 제844조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7.14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3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의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33점보다 0.19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89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시행계획상 추진 절차의 수준이 ‘내부 검토’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 대상으로 명시한 영유아 및 아동 외에 미혼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7.29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의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33점보다 0.04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서도 0.44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는 사업 추진에서 적절한 방법이나 더 적극적인 내용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그 성과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6.71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33점보다 0.62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96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은 비교적 사회적 이견이 적은 과제임에도 구체적인 완료 목표 시점이 없어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은 자녀의 성(姓)·본(本)에 관한 「민법」 개정을 성과지표로 하며 2022년도 성과 목표는 내부 검토이다.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6.71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33점보다 0.62점 낮았고, 전체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72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내부 검토 외에 다른 목표가 없어 사업 관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민법」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성과 목표로 두고 있으나 별도의 성과 측정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6.71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33점보다 0.62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6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성과 측정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 해외 법령 검토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시행계획상 법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내용이 전혀 없고 사업의 성과지표인 「민법」 개정'은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추진 실적에서 주요 성과를 '내부 검토'로 작성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을 판단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가. 사업 소개¹¹⁾

여가부에서는 2021년부터 불합리한 가족 제도를 자녀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친부 자녀 인지 시 종전 성 사용, 부성 우선원칙 폐지, 혼인 중·혼인 외 출생 구분 폐지 등 차별적인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자녀 성본 결정 방식과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개선하는 것 등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 7월에 발표된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에는 행안부, 여가부, 복지부 등에서 생활 속 다양한 가족에게 차별적인 제도를 발굴 및 개선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022년 하반기에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발표과제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할 계획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중으로 가족 다양성 캠페인인 ‘세상 모든 가족 함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씨와 본(本)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

11)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62-1164 참고하여 작성.

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9.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8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43점보다 2.0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보다 0.66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족 개념 확대 및 권리보호는 기존의 부계 중심주의를 타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출생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를 실시한 후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7.29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3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43점보다 0.14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74점 낮았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 실시 후 자료에

기반한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추진 체계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업의 추진 방향은 있으나 사업 체계 및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7.0점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43점보다 0.43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7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생활공동체의 권리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족 다양성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부계 중심 법령 개선 사이의 연관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법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 논의 수준에서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고 법제 개선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할 법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법률혼·부계 중심의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22년 상반기에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범부처 인구정책 TF 발표과제 이

행 점검 및 중장기 검토과제를 논의하며, 연중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7.14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43점보다 0.29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보다 0.5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캠페인은 해당 과제 내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법률혼·부계 중심의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가족 다양성 캠페인의 국민 참여 수를 성과지표로 두고 있다.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7.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43점보다 0.43점 낮았고, 전체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서도 0.4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성과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부 교체가 예정

되어 있어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가족 다양성 캠페인 국민참여 수’를 성과지표로 하고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수의 누적 합계를 성과목표 실적으로 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평균 6.7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점수에 대한 최저점은 2점, 최고점은 10점으로 전문가별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점수는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43점보다 0.72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6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가족 다양성 캠페인 국민참여 수’는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는 지표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여 관리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했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법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고, 시행계획에 기술한 사업 추진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면 과제의 목표가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인데 주요 성과에 ‘1인 가구 소득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포함되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최근 비혼 출산과 관련된 논의가 저출산 대응 정책 측면에서 이

루어지는 것에 대해 여전히 혼인 중 출생과 혼외 출산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는 다소 모순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4장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서비스 체계 영역 모니터링

제1절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제2절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제3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제4장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서비스 체계 영역 모니터링

제1절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1.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가. 사업 소개¹²⁾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는 ‘가족 형태별(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와 온라인서비스 및 가족상담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추진된 가족센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다양한 가족들에게 상담, 교육, 돌봄, 가족문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2019년 8개소, 2020년 70개소, 2021년 96개소(누적)가 착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가족센터의 전신은 2005년부터 추진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2021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2년 기준 205개소가 운영 중이다.

온라인서비스 및 가족상담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를 법적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12)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65-1170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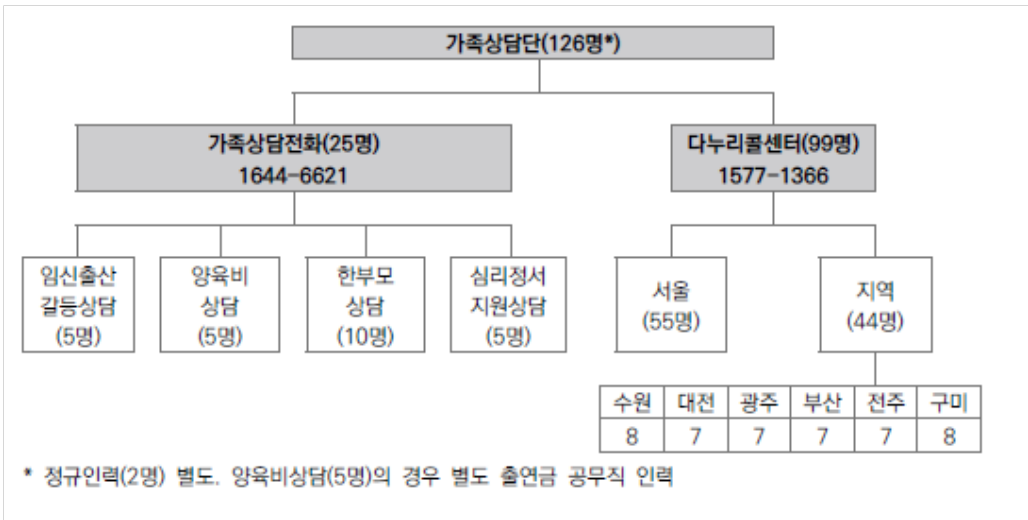
있다. 상담서비스는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 및 대면 상담, 문자 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표 4-1〉). [그림 4-1]은 가족상담전화 조직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가족상담단 내에 다누리콜센터와 가족상담전화 조직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가족상담단 내에 다누리콜센터와 가족상담전화 조직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 등 폭력피해 긴급지원, 종합정보,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가족상담전화는 임신·출산·양육에 관련한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표 4-1〉 가족상담 운영

구분	운영 방법
전화 상담	• (다누리콜, 1577-1366)(가족상담, 1644-6621)
온라인 상담	• 다누리콜/한부모/양육비 상담
방문 및 대면 상담	• (다누리콜) : 대면상담, 방문 상담, 긴급피난처 제공 • (한부모/양육비) : 대면상담 제공
문자 상담	• 다누리콜/한부모/양육비 상담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1167

[그림 4-1] 가족상담전화 조직체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1168

2022년 추진계획에는 ‘가족센터 건립’, ‘온라인서비스 내실화’, ‘가족상담 기능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 가족센터는 2021년 기준 96개소가 착수되었으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설계 공모 방식 실시 설계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공정률이 저조한 한계가 있었다. 2022년에는 총 108개 사업 중 이미 준공된 4개소를 제외한 104개소의 지자체별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공정관리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온라인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족지원통합시스템 DB와 인프라 통합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상담전화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규상담 채널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 신규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전반적인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을 제시하였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은 가족 형태(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확대 등의 서비스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소통, 교류를 위한 가족센터 건립의 전국 확대를 가속화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 등 가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는 온라인서비스를 포함한 가족상담을 제공한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5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1점보다 0.52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24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서비스를 체계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기존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센터를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나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병렬적으로 배치된 인프라 간의 통합적·체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되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센터 등이 협력하여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로 가족센터의 건립이 이루어졌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2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1점보다 0.19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17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의 추진 체계 및 실현성이 적절하고, 사업의 대상, 주체, 방법, 절차 등이 상세히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다른 사업과 통합하지 않고 분리되어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 및 차별성 부재,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가족센터의 건립, 온라인 서비스 내실화, 가족상담 기능 강화이다. 가족센터의 경우 총 108개 중 이미 준공한 4개소를 제외하고 104개소의 가족센터 건립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공정관리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지원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통합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실현해 온라인서비스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가족상담 전화 활성화를 위한 신규 상담채널 강화, 공공부문 신규 협력 기관 발굴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을 실현해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1점보다 0.01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27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제공이 사업 목적에 적정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 방식으로 접근 문턱이 높아졌고,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통역서비스 도입을 제안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가족센터 건립, 온라인서비스 내실화, 가족상담 기능 강화는 개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가족센터 건립의 경우, 여가부에서 매월 1회 보조금 교

부 및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는 매월 사업 추진 보고서를 작성하며, 여가부에서는 분기별 1회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2년 2월 사업정산 및 실적을 보고한다. 온라인서비스는 연중 시스템 구축 작업을 수행하며, 가족상담 기능 강화의 경우 3월까지 정부24시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7월까지 화상상담 채널 구축, 12월까지 공공부문 신규 협력기관 발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8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1점보다 0.18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16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체로 인한 가족센터 건립의 지연, 가족상담 기능 강화 사업의 서비스 제공 추진 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족센터 건립 일정이 사업 추진 일정이라기보다 모니터링 일정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온라인서비스 내실화의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은 가족센터의 건립 공정률을 매년 전년 대비 5%씩 증가시키는 것을 성과로 관리한다. 예산의 집행은 매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며, 매월 지자체/분기별 1회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이용 효과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하여 전년 대비 0.2% 증가를 목표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1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1점보다 0.16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7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비교적 적절히 잘 관리되고 있으나 온라인서비스 내실화, 가족상담 기능 강화와 관련한 정기적 점검 및 성과지표 추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의 목표는 가족 형태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확대 및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족센터 건립과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평가가 성과 측정 지표로 사용된다. 가족센터의 건립은 결산보고서를 기반으로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을 공정률로 계산하여 전년 대비 5% 증가를 목표로 하며, 가족서비스의 이용 효과성은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3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4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1점보다 0.68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01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개의 평가 지표가 사업 내용을 포괄하고 사업 달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다. 가족센터 건립 같은 양적 성장보다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향상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년 대비 5% 상승, 0.2% 상승 같은 실적 증가 목표치의 설정 근거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가족센터 이용자 수, 가족서비스 이용자 수와 같은 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기존의 건강 및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의 사업과 연계하고 사업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량적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센터들을 통합·연계하여 인프라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양적 성과 평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 지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서비스의 효과성 지표는 너무 광범위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세부적으로 나눈 질적 향상 평가 지표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2절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1. 주거지원 강화

가. 사업 소개¹³⁾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는 ‘생계와 자녀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에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1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제25조(비용의 보조)를 법적 근거로 추진된다.

1987년부터 추진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현재 모자가족 복지시설·부자가족 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일시지원 복지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4년부터 추진된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형)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자립 준비를 돕는 사업이다.

2021년 추진 실적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 것이 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33호 확대하여 누적 공급물량이 2021년 기준 222호가 되었다.

2022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시설 기능보강 지원, 상담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3)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73-1175 참고하여 작성.

LH 공사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2021년 공급량에서 23호 확대하여 245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제시하였다. 사업들의 상세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4분기에는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를 제작 및 배포하고, 2/4분기와 3/4분기는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신규 선정·신규물량 확보·계약 체결을 실시한다. 4/4분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의 목표는 생계와 자녀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에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1987년 모자보호 지원 사업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4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고,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0년 미혼보자가복지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에 이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5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주거지원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3점보다 0.84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20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목적·내용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주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는 점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측면에서 입소 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및 편의성 향상이라는 방향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어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 과정에서의 부가적인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지원 확대 관련 계획들도 고려할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 시행 주체는 여성가족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이며 시행 방법은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을 계획하여 시·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운영기관은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운영, 입주자 자립지원, 주택관리 사항 등을 보고한다. 운영기관에서 관리하는 주택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 대상자의 입주 신청에 따라 임대하게 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14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주거지원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3점보다 0.41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11점 높았다.

이 사업에 대하여 시행 주체, 시행 방법, 추진 절차 등 기본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편이나 사업 대상 범위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명시하여 사업 목적과 상이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교통 접근성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주자 선정 및 지원 역할을 하는 운영기관 선정 기준이나 규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은 2021년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입소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의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로 완화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2020년 189호에서 2021년 222호로 확대하였다. 다만 아동 양육 환경, 경제생활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의 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2022년에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시설 기능보강 지원, 상담·의료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지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2021년 222호 대비 23호 늘어난 245호로 확대 공급하고자 하였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14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주거지원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3점보다 0.41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서도 0.41점 높았다.

매매임대주택 확대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사업 목적과 부합되며 사업 목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공급만으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입소자 상담 등에서 연도별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은 분기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1분기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를 제작·배포하고, 2분기에는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신규 선정을 목표로 한다. 3분기에는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신규물량 확보 및 계약 체결을, 4분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9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주거지원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3점보다 0.2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26점 높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분기별로 사업 내용 및 사업 수행 과정별 일정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시설 기능보강, 의료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추진 일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 하반기에 시행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관리는 시행 주체인 여성가족부,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및 지자체로의 예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기관에서의 입주자 선정 및 운영, 자립지원 등의 활동과 주택관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6.7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저점은 4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주거지원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3점보다 1.02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72점 낮았다.

이 사업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한부모 당사자 입장에서 시설 운영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업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점검 시스템의 필요성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의 성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만족도로 평가한다. 각 지자체를 통해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성과 목표는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1.6점 상향한 값으로 정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6.86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최저점은 4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주거지원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3점보다 0.87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48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 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복지시설의 만족도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관련 지표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85점 이상의 만족도를 꾸준히 산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수집이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2020년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4,006명이며 그중 무주택 한부모가족은 약 146,000명(무주택: 79.3% 적용)으로, 임대주택 245호를 적용할 때 공급 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서 빠른 속도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고, 입주 기간이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데, 높은 주거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거주기간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이외의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추진 일정의 조정, 사업 관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저출산 해소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2.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가. 사업 소개¹⁴⁾

한부모가족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인 ‘양육비 지급 확대와 양육비 확보 강화’ 사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주체로 추진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 양육비 지원사업은 1992년 저소득 모자가정 만 4세 미만 아동에 월 1만 원 수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을 계속 확대해왔다(관계부처합동, 2023).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다.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는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2021년에는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여 고의적인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요

14)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78-1183 참고하여 작성.

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정보 조회 및 신용·보험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였다. 긴급지원 종료 후에는 긴급지원액을 소송이 아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서비스 위탁기관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하였다.

2022년도 시행계획에는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확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 및 사업소득을 30% 공제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을 명시하였으며, 2022년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2022년 추진계획으로 한시적 양육비 및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할 계획을 밝혔으며 해당 계획 또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또한, 면접교섭서비스 위탁센터를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

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9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8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21점보다 0.72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16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해당 세부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4차 기본계획과 관련성이 있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에서 양육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계급여와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병행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과제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된 점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지만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지자체, 양육이행관리원에 의해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여성가족부로 교부되고,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다시 교부되어 한부모가족의 통장으로 지원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검토·승인, 출연금 교부, 점검, 결산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71점으로 나타났

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21점보다 0.50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68점 높았다.

전문가는 이 사업의 추진 체계와 절차가 명확하며, 세부 사업별로 사업 대상, 시행 주체, 시행 방법, 추진 절차 등 기본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사업 내용과 목표를 반영하기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건강진흥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간 분리가 필요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의 내용은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영역의 추진, 면접교섭서비스의 위탁기관운영을 통한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지역을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중위 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한시적 완화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5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21점보다 0.29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77점 높았다.

전문가는 세부 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양육비 지급 확대 및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면접교섭서비스,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은 실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제제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의 일정은 분기별로 추진된다. 2022년 1분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기준 고시, 사업 안내(지침) 제작·배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고시, 면접교섭서비스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계획하였다. 2분기에는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양육비 이행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3분기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 의견을 지자체를 통해 수렴한다. 4분기에는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완료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21점보다 0.21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33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 추진 일정이 비교적 적절하며,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분기별 세부 사업 내용 및 사업수행과정별 일정이 적절히 명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면접교섭서비스 위탁운영기관 공모 이후 후속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분기별 일정과 양육비 이행 활성화를 위한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21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21점보다 1.0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22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 관리 부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만족도와 양육비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성과를 측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수혜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최근 4년간 실적 대비 4.7% 상향을 목표로 한다. 양육비 이행률의 경우 연간 결과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 확정 건수 대비 양육비 이행 건수의 비율을 측정하며, 최근 4년간 추세치를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

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9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21점보다 0.28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59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각 성과지표가 사업 내용을 포괄하고 사업 달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과 양육비 이행률을 정량지표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한 의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시에 현재의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 달성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크지 않고, 사업 만족도 이외에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육비 수준의 적절성, 양육비 지원 대상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사업 관리 체계를 제시하여 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사업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제도적 수용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양육비 지급 확대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체계 및 전달 체계는 다소 미비하고, 양육비이행관리,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2020년 양육비 이행 강화법 통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되었는데 정책 효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수행기관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2021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월 25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는 규정이 신설되는 성과가 있었다. 2022년 추진계획상에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대상 양육비를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명시하였다. 분기별 추진 일정에 따르면, 1/4분기에는 2022년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범위(지급기준) 고시, 2022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침 안내, 2022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지침 안내가 이뤄진다. 2/4분기에는 2022년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한다. 3/4분기에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침 개정 의견 수렴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4/4분기에는 2022년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가 완료된다는 계획을 명시하였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지원 등으로 인한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기존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1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청소년한부모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5점보다 0.42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60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관련성과 연계성이 있고, 청소년한부모 정책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양육비 인상 및 정책 개발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청소년한부모뿐 아니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양육비 단가가 청소년한부모의 자립과 안정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현금성 지원에 치중되어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로 배정된 예산이 지자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가족 통장으로 급여 입금되는 형태로 지원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3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8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청소년한부모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5점보다 0.58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30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해당 세부 사업의 추진 체계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가 명확히 제시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통합관리, 자립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도 필요하며,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 추진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향후 경제적 지원 이외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5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8점이었다. 이 점수는 청소년한부모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5점보다 0.25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추진 내용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2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추진 체계와 동일하지만 학습권, 성교육 등을 포함한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의 복합적인 욕구 해소와 안정적 양육 및 자립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양육비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용역의 추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은 1분기에는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을 고시하고 자립지원사업 지침 안내와 미혼모·부 초기 지원사업 지침 안내가 이루어진다. 2분기에는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가 추진되며 3분기에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침 개정 의견을 지자체로부터 수렴한다. 마지막 4분기에는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를 완료할 계획

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1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8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청소년한부모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5점보다 0.42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5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이나 사업량을 고려할 때 추진 일정이 적절하고, 분기별로 세부 사업 내용 및 사업수행 과정별 일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양육비 인상과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은 사업명과 연계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1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9점이었다. 이 점수는 청소년한부모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5점보다 0.58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26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 내용에 관한 관리 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일정 안에 정기적인 모니터링 또는 점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서 사업 관리 체계 유무 및 실시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내부의 노력이나 방법들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 수, 청소년한부모 만족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만족도에서 변경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는 수행기관 보고에 의해 측정하며, 2022년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된 청소년한부모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1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8점이었다. 이 점수는 청소년한부모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75점보다 0.58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17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성과지표가 포괄적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나 세부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분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청소년한부모의 자립과 양육부담 경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정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양육 스트레스 감소지표, 사례관리 이용자 수, 자립지원 사업 이용자 수 등이 제시되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청소년한부모 만족도는 신규 성과지표로 사업 내용을 포괄하고 사업 달성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한 지표로 판단되나 성과 목표치와 목표치 설정 근거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본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 관리 체계를 제시하여 사업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는 경험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가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 내용에 맞는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자립지원, 양육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전문가 의견으로는 청소년한부모는 청소년기의 욕구와 한부모가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특수한 집단이므로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3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1. 결혼이민자

가. 사업 소개¹⁶⁾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다문화 부모학교 프로그램, 맞춤형 실용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를 법적 근거로 하며 가족센터에서

16)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2년도 시행계획. pp.1191-1193 참고하여 작성.

지자체 보조와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는 한국 생활에 초기 적응이 이뤄진 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 정착 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미래설계 프로그램, 관심 분야별 세부 계획 수립 프로그램, 정착지원 서비스 정보체계 탐색 등을 제공한다. 다문화 부모학교는 결혼이민자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거나 컴퓨터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실용 한국어 교육은 수준별로 7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과 맞춤형 실용 한국어 교육은 지자체의 보조로 이뤄지며, 다문화 부모학교는 민간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

2021년 사업별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에 27,315명, 다문화 부모교육에 1,188명, 맞춤형 실용 한국어 교육에 587,740명이 참여하였다. 다문화 부모학교의 경우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되어 참여 인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 저조하다.

2022년 추진계획에는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지침 교부, 사업 추진 실적 매달 점검,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회가 포함되어 있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다문화 부모학교 프로그램, 맞춤형 실용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13점으로 나타났다.

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결혼이민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0점보다 0.23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64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이 다문화가족의 제도적 수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 대비 부족하며, 사회 참여 확대의 내용이 단순 개인역량 강화인지 공동체 형성 및 지역 네트워크 확대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행 주체가 되어 진행된다. 사업은 지자체 보조금과 다문화 부모학교의 민간 기부금으로 시행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88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8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결혼이민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0점보다 0.98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85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추진 체계 적절성에 대하여, 추진 체계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련 업무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지침을 교부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 확대를 위한 지속적 협의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1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결혼이민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0점보다 0.77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60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현재 제시된 내용은 사실상 정착 단계별 지원의 내용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정착 단계별 지원의 영역이 단계별로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근거한 현실이 반영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리고 검정고시 지원 및 컴퓨터 활용 교육은 현실과는 멀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며, 부모교육의 경우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어떤 지도가 필요한지,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로 및 진학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제 자녀의 성장을 위하여 부모에게 필요한 교육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애 주기나 이주 기간의 경과에 따른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기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가족사업 안내 지침교부를 1월까지 수행하고, 매월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실적을 점검한다. 그리고 격월로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2022년 하반기 사업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75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결혼이민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0점보다 0.15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08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매월 실적점검이 다문화가족센터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분기별 등으로 점검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업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연 1회보다 반기별 1회로 사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연단위 사업이지만 지속할 사업은 차년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88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결혼이민자 사

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0점보다 0.02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관리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45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도 좋으나 연초에 계획서 작성과 계획서의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월별 점점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의 이용 인원으로 설정되었다. 수행총괄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적을 조사하여 취합한 후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를 목표로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6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결혼이민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0점보다 0.27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29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참여자의 실제 정착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이용 인원 이외에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학교, 실용 한국어 교육 실적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원예산의 불확실성에 반해 매년 전년 대비 3% 증가는 사업 내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결혼 이주여성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지속적

3%의 증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본 사업과 관련한 기타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사업들을 각 센터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물리적 제약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참석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결혼이민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리더로 하는 동아리 및 역량강화 소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다문화가족 자녀

가. 사업 소개¹⁷⁾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다재다능)’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성과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다재다능 사업에는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미래설계 프로그램, 위기 사례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센터에서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제공한다(〈표 4-2〉).

17)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94-1195 참고하여 작성.

〈표 4-2〉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다재다능)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아정체성 확립,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통합캠프 운영 등 멘토링 연계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사회성 진단, 청소년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리더십캠프,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미래설계 프로그램	동기부여, 적성검사, 진로소양교육, 진로설계, 직업체험활동 등 지원
위기 사례 지원 프로그램	심층상담, 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1194.

2021년 다재다능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121,711명이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에는 204개소로 확대되었다.

2022년 추진계획에는 다재다능 사업을 포함한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1월에 교부하고, 운영실적으로 매월 점검하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사업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12월에는 운영기관 확대 수요조사가 진행될 것이 제시되었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관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5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가족 자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2점보다 0.48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

에 비해 0.27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다재다능 외에도 다배움, 다채움 사업 등의 확대는 목적에 부합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너무 많아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적에 대하여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란 존재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문제이며 교육시킬 수 없는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센터가 시행 주체가 되어 지자체의 보조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38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가족 자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2점보다 0.36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35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중심의 추진 체계는 적절하고 관리에 용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다만 지자체마다 자녀들에 특화된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 주체를 열어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교사의 참여도 포함할 수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의 내용은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가족사업안내 지침 교부와 매월 사업 추진 실적의 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75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가족 자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2점보다 0.27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02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위기 사례 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다재다능과 다배움 사업 내용은 적절하지만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을 하나로 묶은 다채움 사업의 경우 두 영역 간 전문성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및 컨설팅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비교적 어린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은 1월에 가족사업 안내 지침을 교부하고, 매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점검하며, 하반기에는 현장점검과 12월에 운영기관 확대 수요조사 및 결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

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가족 자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2점보다 0.02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33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추진 일정을 좀 더 견고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매월 주기적 실적점검은 피로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점검을 줄이고 연 2회 사업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25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가족 자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2점보다 0.23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82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좀 더 내실화되기 위해서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 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의 목표와 지향하는 바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수행 총괄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실적조사자료를 취합하여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한 목표로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25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가족 자녀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02점보다 0.77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09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수의 양적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같은 질적 평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 개선 방안으로 국외 출생 중도 입국, 국내 출생 자녀 등의 이주배경에 따른 맞춤형 성장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 운영 경험이 중장기적으로 급증할 외국인 가정 자녀의 성장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가. 사업 소개¹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18)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197-1198 참고하여 작성.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를 근거로 추진된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주민 밀집 지역인 안산과 화성에서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2022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던 2021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안산·화성)별로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진행되었다. 우선,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관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안산시는 외국인 및 동포 아동·청소년 11,360명, 화성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재학 2,281명, 학교밖 771명(추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자체별로 16~19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학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기관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관·학 협의체,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을 통해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2년 추진계획에는 3개 시·군·구(경기 화성시, 시흥시, 경남 김해시)를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명시하였다. 각 지자체는 민·관·학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센터 운영, 급식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월에는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2월에 사업을 추진하며, 12월에 성과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과 관련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 완화 등의 사회적응 지원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75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29점보다 0.46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1.02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협의체 구성과 네트워크를 운영할 명확한 주체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조기 적응을 위한 방안일 수 있으나, 연계사업 자체가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지자체에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 등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한계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 정확한 사업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6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3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29점보다 0.34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40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업 시행 주체로 여가부와 자치단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지자체에서 지역협의체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 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진 체계가 자치단체라는 점이 전문성 확보와 지속성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은 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관·학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센터 운영, 급식 지원이 추진된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1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29점보다 0.16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60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민관학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역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체류상담, 수준별 한국어 교육, 공교육 진입 상담 및 진로, 심리 상담 등의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구심점을 하는 기관과 실무자를 통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연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과 급식 지원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은 2022년 1월에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12월에 성과보고회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6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29점보다 0.34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04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추진 일정을 좀 더 견고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고, 문건에 나타난 추진 일정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25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29점보다 0.04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18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종합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관리, 컨설팅과 평가 시스템의 관리 등이 명확하지 않고, 성과관리 지표가 연계사업 참여 지자체 수로만 되어 있어 사업 관리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한 지자체 및 민관협력 사업 관리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고, 연말 성과보고회 이외에 별도의 성과 관리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지역기관 연계사업 참여 지자체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치는 2022년 기준 3곳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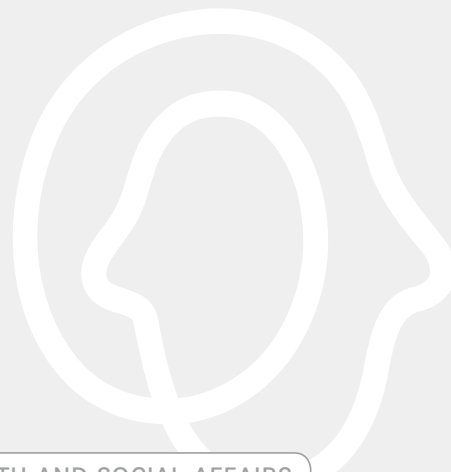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6.38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최저점은 3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29점보다 0.91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96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연계사업 참여 지자체 수를 보는 것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얼마나 연계를 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게 될 경우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수를 늘리게 되므로 사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밀집 지역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중심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청소년복지법’ 개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범사업이 지역사회에서 호응 및 성과가 좋았는데, 본 시행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성과의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5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영역 모니터링

제1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제2절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제 5 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영역 모니터링

제1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1.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가. 사업 소개¹⁹⁾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정책은 대중매체 및 공공 관련 웹사이트 등에 등장하는 가족 차별·편견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수행한다.

이 사업은 2020년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광역자치단체 웹페이지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가족 현황을 조사하였다. 2021년 추진 실적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웹페이지(1,464개) 속 콘텐츠 402,503개의 가족 다양성 편견·차별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사례를 정리하여 데이터 구축 및 전문가 감수를 수행하였다. 또한, 청년·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경력단절 여성 10명을 모집하여 가족 다양성 공공서비스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다양성 편견 해소를 위해 유튜브 공익광고와 사례집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2022년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총 3가지 주요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첫

19)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200-1202 참고하여 작성.

째, 중앙·지방공공기관의 보도자료·간행물·웹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점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가족 다양성 차별·편견 언어를 공모하여 차별·편견 유발 요소를 발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견 해소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한 사례집,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및 차별적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 확산을 목표로 가족 다양성 차별·편견 사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5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13점보다 0.44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20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업 목표와 내용이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부합되지만, 인식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황조사 및 취합만으로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차별을 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

원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2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13점보다 0.07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17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 추진의 주체가 명확하고 추진 방법이나 절차가 명료하며, 편견요인의 발굴, 결과 분석, 환류, 사례집 발표 등 추진 내용 및 체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도록 추진 체계를 다변화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도자료·간행물·웹페이지 내용에서 가족 다양성 관점의 차별·편견 요인을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차별·편견 유발 요소를 발굴하고, 차별·편견 사례에 대한 시정활동 및 사례 공유·확산, 국민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13점보다 0.13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27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며,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의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의 서비스 전달 과정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기관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일정은 1월부터 가족 다양성 편견요인 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을 수행하고, 10월부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시정·개선 조치를, 4월부터 편견 해소 모니터링 성과 확산 및 국민인식 개선 노력을 수행한다. 그리고 10월까지 가족 다양성 편견 유발 요소를 발굴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2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13점보다 0.07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53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의 추진 일정이 명시되어 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직접 수행하므로 사업 달성에 무리가 없고, 모니터링단 구성부터 운영, 성과 확산에 관한 일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모니터링 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은 사업 추진 절차와 추진 일정 간에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8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13점보다 0.26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4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업 관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점검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편견 해소 모니터링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 다양성 편견 해소 모니터링 건수를 집계하여 전년 실적 대비 15% 증가한 건수를 목표로 하여 사업을 평가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9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8.13점보다 0.20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59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성과지표가 사업 목표에 부합되며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잘 설정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모니터링 건

수보다 모니터링 후 변화한 내용이나 변화된 건수에 대한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고, 매년 높아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사업 개선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의 서비스 전달 과정, 사업 참여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사업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 자체보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성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가. 사업 소개²⁰⁾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온라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204-1205 참고하여 작성.

2021년에는 기업·민간단체·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2021년 9월 기준 약 13만 2천 33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온라인으로는 ‘다누리배움터’ 사이트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및 DB 관리, 콘텐츠 제작, 표준강의안 수정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2022년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누리 배움터 운영, 전문강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추진, 인식개선 영상 콘텐츠 제작 등 2021년 계획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분기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1/4분기에는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4분기에는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3/4분기에는 전문강사 신규자를 양성하고 4/4분기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제시하였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4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6점보다 0.47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34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이해교육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적합하고, 세부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급격히 확대되는 다문화 사회에 맞춰 국민

의 인식개선 수준을 변화시키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과, 다누리 배움터의 적극적 홍보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총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0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6점보다 0.11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0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총괄하는 체계가 적절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와 절차 또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사업 수행 단계 및 주체별로 추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고, 건강가정진흥원에서 파견하는 강사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2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6점

보다 0.31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5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다문화가족 차별 해소 및 문화 다양성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차별과 편견 해소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추가되어 전문가의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의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2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6점보다 0.24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53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분기별로 세부 사업 내용 및 사업수행 과정별로 일정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보수교육), 다누리배움터 운영에 대한 일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계획수립 기간을 줄이고 콘텐츠 제작과 전문강사 양성 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2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6점보다 0.69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16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업 관리가 여성가족부와 건강가정진흥원 2단계 관리 체계로 수행되는데,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이수자 수로만 사업 관리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콘텐츠 제작 건수 혹은 다문화 수용성 증가율 등의 성과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이수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건강가정진흥원의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전년 실적을 참고하여 2022년 기준 146명을 목표로 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5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96점보다 0.43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19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이해교육은 교육 이수자의 인식 변화와 차별적 행위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 수만 측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수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 개발 또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수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제작된 콘텐츠와 강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실적의 목표가 전년 실적을 참고한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 체계, 내용, 관리, 성과지표 등은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사업 이외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절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가. 사업 소개²¹⁾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은 제4차 시행계획에 처음 추가된 신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해당 교육을 통해 가족 다양성 인식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지침을 담당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한다.

2021년 추진 실적에는 가족 다양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에는 가족 다양성 수용 증진 교육 영상 콘텐츠 3종과 수용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강사 양성을 위해 부모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총 418명 중 98명에게 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7개의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기관을 통해 총 7,514명을 대상으로 263회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표 5-1〉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기관(총 17개소) 리스트

구분	기관명
통합센터 (12개소)	경기 구리, 경기 김포, 경남 양산, 경북 청도, 대구 북구, 대전 서구, 서울 강북, 서울 강서, 전남 나주, 전남 구례, 전북 무주, 전북 완주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경기 안산, 부산 해운대, 서울시
민간단체 (2개소)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지역사회교육사회적협동조합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1208.

21)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207-1209 참고하여 작성.

2022년 추진계획에는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부모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전환 교육을 실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개최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및 차별적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 확산이다. 이를 위해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캠페인을 개최한다.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33점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4점보다 0.49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44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되고, 주제별 영상콘텐츠 개발로 파급력이 예상되며, 인식뿐 아니라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연계성도 갖추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및 차별적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교육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각급 학교 공교육에 포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이 사업은 공무원, 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등 다양한 가족과 접촉이 많은 중점 교육 대상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4점보다 0.16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0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추진 방법이나 절차가 명료하며, 특히 강사양성 교육의 참여 신청을 명기하여 사업 추진을 명확히 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는 추진 체계의 다변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연계 및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7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4점보

다 0.16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에 비해 0.27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세부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사업 대상별 교육 내용의 차별화, 일반 국민 대상 교육 계획, 교육 내용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사업의 일정은 2월부터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전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부터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의 운영 및 관리가 추진된다.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9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4점보다 0.06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23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추진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 절차마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중간 점검 등의 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4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4점보다 0.44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0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업운영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관리 주체,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모니터링 또는 점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관리 체계 유무 및 실시의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이 연중 추진되므로 일정 기간마다 점검 절차를 통한 환류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교육 참가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사업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참가자 수를 측정하여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량을 목표로 사업이 평가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4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4점보다 0.44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06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성과지표가 사업 내용을 포괄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엔 다소 미흡하여 교육 참가자 수 이외에 다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족 다양성 수용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성과지표, 교육 참여율, 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콘텐츠 개발 건수, 다문화 수용성 증가율 등의 추가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들은 가족센터의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성과관리 지표에 대한 세분화 및 측정 방식의 고도화 작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혼인 규범 약화, 이혼 및 비혼·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 속에 가족 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식개선은 대중매체 또는 캠페인을 통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인구 교육, 다문화 수용 및 성인지 교육 등 다른 감수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가족 다양성 교육을 국민 필수 교육으로 포함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가. 사업 소개²²⁾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은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에 확대하여 중앙-지방 간의 성평등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는 2019년 1월부터 인천·경기·전남·경북 4개의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설치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16개소를 대상으로 공모해 4개소(인천여성가족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남여성플라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센터 업무에 ‘양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2021년부터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지역 성 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에는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역양성평등센터 법적 근거 마련’과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확대’로 제시하였다. 양성평등센터 근거 마련을 위해서 2022년 상반기에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양성평등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2)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p.1210-1211 참고하여 작성.

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본 사업의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합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3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3점보다 0.54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목적·내용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77점에 비해 0.40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시의 적절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평등한 가족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센터의 존재 및 확산이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양하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는 한 기관의 노력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며, 양성평등센터를 신규 개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중앙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과 노력을 전제로 환경 조성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지역양성평등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8.17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3점보

다 0.34점 높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추진 체계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8.03점에 비해 0.14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지역양성평등센터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체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추진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서 고도화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내용 및 방법을 포괄하는 사업 추진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양성평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7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3점보다 0.10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내용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73점과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정책 모니터링, 양성평등 문화 확산,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등의 사업 방향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와 지역 가족센터와의 사업 중복을 막기 위한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의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

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7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3점보다 0.13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67점에 비해 0.03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추진 시기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되지 않아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명확한 일정 제시가 어렵지만 기존 센터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환류를 통해 새로 개소하는 센터를 짧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본 사업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걱정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정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40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6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3점보다 0.43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사업 관리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43점에 비해 0.03점 낮았다.

전문가들은 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지역과 센터 선정 기준, 회기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 관련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 등의 사업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본 사업은 지역양성평등센터 개소 수를 전년 대비 1개소 증가를 목표로 성과를 측정한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0점(전혀 적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적절함)의 범주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7.63점으로 나타났고,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10점이었다. 이 점수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의 모든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인 7.83점보다 0.20점 낮았고, 전체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인 7.34점에 비해 0.29점 높았다.

전문가들은 성과지표가 사업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사업 달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평가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양적 지표뿐 아니라 센터 활동의 양성평등 증진 성과 및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된 성과지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장기적 계획하에 매년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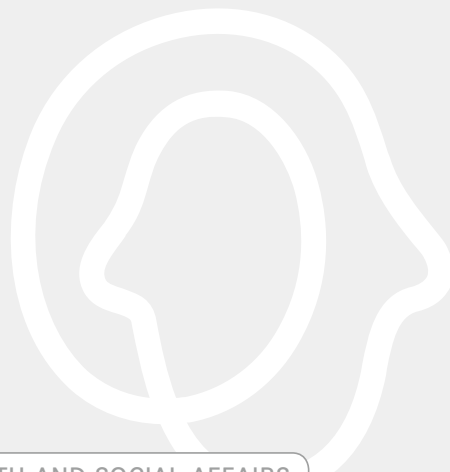
아. 기타 사업 개선 방안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지역의 가족센터 및 양성평등센터 등의 기간과 협업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평등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역별로 기관, 연령 및 세대별 성평등 교육 현황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 교육 설계와 집단별 성평등 인식 개선 수요를 반영하는 콘텐츠 등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부합하는 사업의 발굴, 추진 체계 및 성과지표 구성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 6 장 결론

이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 시행계획 중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정책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하였다.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구성된 세부 정책에 대해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목을 모니터링하였다. 다양한 가족 관련 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분야마다 7~8명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해당 전문 분야의 개별 사업마다 6개의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 각각 0~10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총 22명의 연구 및 현장 전문가가 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정책 평균이 7점과 8점대에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별 정책별로 평균 점수를 보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정책이 모니터링 항목이 평균 8.55점으로 전체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7.29점으로 세부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영역별 모니터링 결과에서 법과 관련된 분야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가

족 구성과 정책 간의 괴리가 커서 개선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가족 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현행법 유지 입장을 발표한 이후 담보된 논의의 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23년에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었고,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도 발의되어 가족 관련 법이 변화하려는 큰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된 법 관련 세부 정책은 변화된 시민들의 삶을 반영한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의 삶 전반에서 양육, 돌봄, 출생과 죽음까지 국가가 시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확립함은 물론이고, 성평등하고 소수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 구성과 이를 기본으로 한 정책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회가 수용하면서 개인이 선택하는 삶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제언한다.

한부모가족 분야의 정책은 양육비 지급 확대 측면에서 정책 추진이 가시적이다. 전체 모니터링 과제 중 평균 점수 8.21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수행 결과를 보인 과제이다. 그럼에도 주거지원이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세부 정책에 대한 추진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은 경제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서비스 및 자립 지원과의 균형을 고루 갖춘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이라는 분야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부분에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 또는 고령사회 대

응 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이주민 관련 이주/이민 사업은 큰 틀에서 보면 저출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맞지만, 나열된 사업들 중의 일부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사업도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일환으로 이주민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포함할 것이라면, 이주민을 도구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 철폐와 인권보호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대부분의 영역이 여러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별 사업이 기능적이면서 부분적이기도 하다. 즉, 이 연구에서 검토한 개별 정책들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 영역, 한부모가족 영역, 다문화가족 영역 등 기본계획의 한 영역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무계감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큰 틀에 대한 접근은 정작 부족한 채로 지엽적인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표 6-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정책 모니터링 결과 (단위: 점)

과제명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인정의 적절성	사업 관리의 적절성	성과 증정 방식의 적절성	평균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 별금지 법제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9.71	7.14	7.43	6.29	6.57	8.14	7.55
	(가칭)평등법 논의	9.71	8.14	8.00	7.29	7.43	6.80	7.90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9.00	8.57	8.43	8.29	8.57	8.43	8.55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의 보호 법제로 개선	9.57	7.57	7.14	7.43	7.43	7.00	7.69
	법무부	9.43	7.14	7.29	6.71	6.71	6.71	7.33
	여성가족부	9.43	7.29	7.00	7.14	7.00	6.71	7.43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8.53	8.20	8.00	7.83	8.17	7.33	8.01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주거지원 강화	8.57	8.14	8.14	7.93	6.71	6.86	7.73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8.93	8.71	8.50	8.00	7.21	7.93	8.21
	청소년한부모	8.17	8.33	7.50	8.17	7.17	7.17	7.7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8.13	8.88	7.13	7.75	7.88	7.63	7.90
	다문화가족 자녀	8.50	8.38	7.75	8.00	8.25	7.25	8.0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7.75	7.63	7.13	7.63	7.25	6.38	7.29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8.57	8.20	8.00	8.20	7.87	7.93	8.13
	문화 이해교육 실시	8.43	8.07	8.27	8.20	7.27	7.53	7.96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8.33	8.00	8.00	7.90	7.40	7.40	7.84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8.37	8.17	7.73	7.70	7.40	7.63	7.83
	평균	8.77	8.03	7.73	7.67	7.43	7.34	-

자료: 저자 작성.

모니터링 항목별로 결과를 보면,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측면은 8.77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은 8.03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은 7.73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은 7.67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은 7.43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은 7.34점이었다. 사업 목적과 내용, 추진 체계를 설정하는 것에 비해 추진 내용이나 일정의 점수가 낮고, 사업을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점수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전문가들은 계획에 비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점대의 평균 점수를 보인 정책들도 다수 있어서 정책 추진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 내용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및 설정에 대한 지적을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 내용은 두세 가지인데 성과지표는 너무 포괄적으로 한 개만 설정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에 맞는 각각의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참여자 또는 이용자 수,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양적인 결과만을 측정하거나 사업의 목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여 사업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할 경우, 기관 이용자 만족도를 특정 사업의 성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므로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근거 자료를 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시행계획에 제시된 주로 계량적인 성과지표와 그것의 달성이 원래의 사업 취지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숫자를 통해 성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정책 실행 결과를 논하기에 유리하지만, 현재 성과 목표와 측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여러 과제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정량적인 방식의 측정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성적인 방식의 성과 측정도 함께 고려한다면 향후 각 사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가족의 현실을 정책이 쫓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세부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정책의 실효성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반기별 관리 방안 같은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리 방법, 주기 등이 사업마다 다르거나 기술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관리 방안의 명확화로 반기별 환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더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관계부처합동. (2023). 2023~2027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4 (2023.11.11.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05.10.27).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554996> (2023.11.7. 인출)
- 김남규. (2021.8.31.). 권인숙 의원 ‘평등법’발의 “21대 국회의 책무”. 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281>
- 대한민국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actionPlanDetail.do?articleId=18&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2023.11.7. 인출)
- 박채영. (2021.12.24.).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241742001#c2b>
- 여성가족부. (2021.9.14.).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가족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79 (2023.11.9. 인출)
- 여성가족부. (2022.8.9.).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가족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95 (2023.11.9. 인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이소영·진화영·오신휘. (2022).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정희선·이도석·이소영. (202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록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법 관련 정책)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3년 일반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연구책임자: 변수정 연구위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세부 정책(사업)

- 1.혼인·혈연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 2.혼인·혈연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가칭)평등법 논의)
- 3.혼인·혈연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 4.(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 5.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 6.법률혼·부계 중심의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성가족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텐데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문 의견은 2023년 9월 8일(금요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선희 연구원(044-287-8353, shhan08@kihasa.re.kr)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	
※ 모니터링은 2022년 시행계획[붙임2]의 세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니터링 영역은 1.사업 목적·내용 2.사업 추진 3.사업 관리 4.성과 측정 방식이고 세부 모니터링 항목은 아래의 6가지입니다. 첨부해드린 자료 참고하셔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 0~10점으로 평가해주시고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아래의 파란색 내용은 구체적인 평가 질문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 목적·내용	(적합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저출산 대책 영역(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역 내 추진 전략(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의 내용(제4차 기본계획[붙임1] pp.40~43참고)과 사업의 목적·내용의 연계성 ① 세부 사업 목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와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② 세부 사업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주제를 제시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추진 방법, 추진 절차 등의 설정 정도 ① 사업추진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추진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사업추진에 적합한 추진체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사업추진체계가 사업 목표와 내용 실현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었는가? - 제시된 내용(사업 대상, 사업 시행주체, 사업 시행방법, 사업추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용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인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인지 여부 ① 세부 사업추진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되어 수립되었는가? ②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사업추진내용이 구체적이었는가?
	(일정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일정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 ①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의 특성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②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적인가? ③ 사업추진 일정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 관리	(적절성)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상시적, 수시적) 모니터링 여부 → 사업 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①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가? - 체크리스트, 매뉴얼, 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과관리는 적절한가?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월별/분기별/반기별 점검회의 여부 등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설정된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 → 정책과의 연관성, 대표성, 구체성 등 ①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가? -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핵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 여부 -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추진방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②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가?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이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적절한가?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적극적인지 여부

문3. (1-1-가) 혼인·혈연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 형태 및 상황(형성과정 포함)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낙인효과 및 차별 방지
-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공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출요청 시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법제화)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4. (1-1-나) (가칭)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추진)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5. (1-1-다)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 자녀의 성분에 관한 「민법」제781조 개정 필요성 검토

- 아동권익 우선 관점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차별적인 구분 개선 등을 위한 친자관계 법령 정비)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6. (1-1-다) 법률혼·부계 중심의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자녀 성(姓) 결정 시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차별적 구분 개선을 위한 친자관계 법령 정비 및 인지 파악 시 종전 성(姓) 계속 사용 원칙 확립)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 기타

※ 다양한 가족 관련 정책 내용이나 모니터링 방법 등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부록 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한부모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3년 일반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연구책임자: 변수정 연구위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세부 정책(사업)**

1.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2.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주거지원 강화)
3.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4.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청소년한부모)
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공공서비스 모니터링)
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가족다양성 이해교육)
8.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텐데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문 의견은 2023년 9월 8일(금요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선희 연구원(044-287-8353, shhan08@kihasa.re.kr)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	
※ 모니터링은 2022년 시행계획[붙임2]의 세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니터링 영역은 1.사업 목적·내용 2.사업 추진 3.사업 관리 4.성과 측정 방식이고 세부 모니터링 항목은 아래의 6가지입니다. 첨부해드린 자료 참고하셔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 0~10점으로 평가해주시고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아래의 파란색 내용은 구체적인 평가 질문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 목적·내용	(적합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저출산 대책 영역(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역 내 추진 전략(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의 내용(제4차 기본계획[붙임1] pp.40~43참고)과 사업의 목적·내용의 연계성 ① 세부 사업 목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와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② 세부 사업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주체를 제시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추진 방법, 추진 절차 등의 설정 정도 ① 사업추진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추진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사업추진에 적합한 추진체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사업추진체계가 사업 목표와 내용 실현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었는가? - 제시된 내용(사업 대상, 사업 시행주체, 사업 시행방법, 사업추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용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인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인지 여부 ① 세부 사업추진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되어 수립되었는가? ②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사업추진내용이 구체적인가? (일정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일정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 ①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의 특성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②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적인가? ③ 사업추진 일정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 관리	(적정성)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상시적, 수시적) 모니터링 여부 → 사업 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①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가? - 체크리스트, 매뉴얼, 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과관리는 적절한가?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월별/분기별/반기별 점검회의 여부 등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설정된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 → 정책과의 연관성, 대표성, 구체성 등 ①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가? -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핵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 여부 -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추진방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②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가?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이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적절한가?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적극적인지 여부

문1. (1-2-가)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형태별(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확대 등 서비스 기반 강화
- 가족센터 건립 확대, 온라인서비스 내실화, 가족상담 기능 강화)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2. (1-2-나)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주거지원 강화)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한부모 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21년 222호 → '22년 245호(증 23호)))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3. (1-2-나)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에 관한 평가
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 - (양육비 지급 확대)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병급,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 24세 이하 →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 (양육비 확보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주기적인 면접교섭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육비의 실질적인 확보방안 마련
- *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명단공개, 형사처벌 도입 등 검토)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4. (1-2-나)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청소년한부모)*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 청소년 한부모 대상 생계·주거·의료·양육·학습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5. (1-3-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공공서비스 모니터링)*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 편견요인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 가족 유형에 따른 고정관념 등 차별 평가 및 사정)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6. (1-3-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전 국민대상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및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전개)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7. (1-3-나)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가족다양성 이해교육)*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다양성 교육 실시, 가족다양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8. (1-3-나)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양성평등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지역양성평등센터 전국 확대)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기타

※ 다양한 가족 관련 정책 내용이나 모니터링 방법 등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부록 3]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다문화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3년 일반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연구책임자: 변수정 연구위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의 내용 과 추진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세부 정책(사업)

1.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2.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결혼이민자)
3.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다문화가족자녀)
4.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이주배경청소년 지원)
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가족다양성 이해교육
8.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텐데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문 의견은 2023년 9월 8일(금요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선희 연구원(044-287-8353, shhan08@kihasa.re.kr)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

※ 모니터링은 **2022년 시행계획[붙임2]**의 세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니터링 영역은 **1.사업 목적·내용 2.사업 추진 3.사업 관리 4.성과 측정 방식**이고 세부 모니터링 항목은 아래의 6가지입니다. 첨부해드린 자료 참고하셔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 0~10점으로 평가해주시고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아래의 파란색 내용은 구체적인 평가 질문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 목적·내용	(적합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저출산 대책 영역(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역 내 추진 전략(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의 내용(제4차 기본계획[붙임1] pp.40~43참고)과 사업의 목적·내용의 연계성 ① 세부 사업 목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와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② 세부 사업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주제를 제시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추진 방법, 추진 절차 등의 설정 정도 ① 사업추진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추진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사업추진에 적합한 추진체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사업추진체계가 사업 목표와 내용 실현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었는가? - 제시된 내용(사업 대상, 사업 시행주체, 사업 시행방법, 사업추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용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인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인지 여부 ① 세부 사업추진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되어 수립되었는가? ②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사업추진내용이 구체적인가?
	(일정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일정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 ①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의 특성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②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적인가? ③ 사업추진 일정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적정성)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상시적, 수시적) 모니터링 여부 → 사업 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①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가? - 체크리스트, 매뉴얼, 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과관리는 적정한가?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월별/분기별/반기별 점검회의 여부 등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
성과 측정 방식	(적절성)	설정된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 → 정책과의 연관성, 대표성, 구체성 등 ①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가? -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핵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 여부 - 성과지표와 기본계획 추진방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②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가?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이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적절한가?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적극적인지 여부

문1. (1-2-가)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형태별(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확대 등 서비스 기반 강화
- 가족센터 건립 확대, 온라인서비스 내실화, 가족상담 기능 강화)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2. (1-2-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결혼이민자)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결혼이민자지원패키지 확대('21년 203개소), 다문화부모학교 프로그램 확대,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로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 진로 설계, 한국어 교육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사회통합 및 역량 개발 강화 - 다문화 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다재다능) 확대를 통해 자녀의 정체성·사회성 등 개발 프로그램 지원('22년 204개소))

(* 이주민 밀집지역(안산·화성)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20~'21년) 추진, 종합지원모델* 개발 및 점진적 확산 검토

*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로교육·취업 등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5. (1-3-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공공서비스 모니터링)*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 편견요인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 가족 유형에 따른 고정관념 등 차별 평가 및 사정)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6. (1-3-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전 국민대상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및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전개)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7. (1-3-나)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가족다양성 이해교육)*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다양성 교육 실시, 가족다양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문8. (1-3-나)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평가와 의견, 사업의 개선 방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양성평등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지역양성평등센터 전국 확대)

모니터링 항목	점수(0-10)	의견
사업 목적 내용의 적합성	_____점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_____점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_____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_____점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_____점	

기타 사업 개선 방안

☐ 기타

※ 다양한 가족 관련 정책 내용이나 모니터링 방법 등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